민원처리규정

제정 2012. 6.20 개정 2013. 7.24 시행 2013. 7.26 개정 2014. 3.18 시행 2014. 3.21 개정 2015.12. 3 시행 2015.12. 7 개정 2019. 2.11 시행 2019. 2.1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을 신속, 친절, 공정, 정확히 처리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다. <개정 2019.2.11>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9.2.11>

- 1. "민원"이라 함은 민원인이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고충민원"이라 함은 민원인이 공사 또는 공사 직원의 위법·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업무처리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 편 또는 부담을 받아 그 해결을 요구한 민원을 말한다.
- 3. "민원인"이라 함은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.

가.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 다만, 그 공 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출하는 때에는 민원인으로 본다. 나. 공사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

다. 성명, 주소, 연락처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

제2조의2(민원인의 권리와 의무) ①민원인은 공사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·공정·친절·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.

②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, 공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조의3(정보 보호) 사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, 수집된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.

제3조(주무부서) ①민원사무는 직제상 업무분장 부서에서 담당하여 처리한다.

②2개이상 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처리담당부서를 결정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사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.

③민원사무의 내용과 관련있는 해당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민원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. <개정 2015.12.3>

제4조(민원서류의 접수) ①민원서류(공사 홈페이지 '사이버 신문고'를

통해 접수된 온라인 민원 포함. 이하 같다)는 민원 업무 담당부서에서 접수하며, 민원인의 실명 확인을 위해 성명,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. <개정 2014.3.18> <개정 2015.12.3>

②제1항의 민원서류는 별지 제1호 서식(민원처리부)에 기록하여 접수하고,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'민원서류'라는 문구 및 해당 내용을처리할 부서명을 명시하여 주무부서에 이송한다. 단, 제1항의 온라인 민원서류는 내용을 출력, 모사전송, 전자문서 전달 등을 통하여주무부서에 이송한다. <개정 2014.3.18.> <개정 2019.2.11>

③민원서류를 이송받은 주무부서는 이를 접수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, 거부할 수 없으며, 고의로 접수시간 지연 또는 반려할 수 없다.

제5조(구두전화 등에 의한 접수) 민원인의 의사표시가 사후에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두 또는 전화 및 이메일, 모사 전 송 등으로 접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민원상담부에 기록한 후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제6조(민원서류의 처리) ①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②민원서류를 기안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그 내용에 "민원서류"라는 문구를 넣는다.

제7조(민원서류의 보완) ①민원서류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그 서류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완, 보정을 요구

하여야 한다. 이 보완, 보정의 요구는 구두, 전화 등으로 할수 있다. 다만, 민원인이 특히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②민원인이 제1항의 기간내에 보완, 보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요구하고, 재요구기간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.

③민원인의 소재가 분명치 아니하여 보완, 요구등이 2회에 걸쳐 반 송되었을 경우에는 취하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제8조(관련부서간의 협조) ①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서 상호간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 여야 하며,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다른 서류에 우선하여 응신하여 야 한다.

②제1항의 요청에 응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, 진행상황 및 처리예정일을 명시하여 협조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처리기간) ①담당자로 하여금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,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처리기간을 정한다.

②민원은 접수한 일시로부터 다음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3.7.24.> <개정 2019.2.11>

- 1. 단순히 확인을 요하는 사항 : 즉시
- 2. 공사 업무 관련 증명, 종결, 반려사항: 24시간
- 3. 진정, 질의, 서류검토 및 조사를 요하는 사항 : 7일
- 4. 현지 확인을 요하는 사항 : 20일

- 5. 기타사항: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제36조의 "민원처리기준표"에 준하여 처리
- ③민원 처리기간 산정시 토/일요일, 국가공휴일 및 기타 사규에 의한 공사 업무중지 기간은 산업하지 아니한다.
- 제10조(진행상황의 통지등) 기간내 민원서류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.
- 제11조(처리결과의 통지) ①민원 처리결과는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2.11>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이의신청의 방법 등) ①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공사의 거부처분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공사에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- 이의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,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와 연락처
- 2.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의 결정내용
- 3. 민원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
- 4.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
- ②공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(이의신청처

리대장)에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3.18.>

- 제13조(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공사는 민원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심의·조정·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전무이사를 위원 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사안에 대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②민원조정위원회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논의 또는 처리한다.
- 1. 고충민원의 심의 및 처분 결정
- 2. 민원인의 이의신청 처분 결정
- 3.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·조정을 위하여 사장이 회부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장은 해당 민원 관련 소관분야의 임직원을 소집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,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.
- ④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·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⑤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공사 직원을 고충민원 또는 민원 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한 민원인의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- 1. 민원처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안내
- 2.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시 보좌
- 3.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
- 4. 민원처리결과의 통보

⑥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이유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민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할 수 있다.

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.

- 1. 공사가 그 민원사무를 처리할 방법이 명백히 없는 경우
- 2. 법령/규정에 의하여 해당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
- 3.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
- ⑧민원조정위원회의 사무 운영은 민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수행한다. <개정 2015.12.3>

제14조(사장의 최종확인)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에서 내려진 처리결정에 대하여는 사장이 그 결과를 최종확인하여야 한다.

제15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

사무관리규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3.7.24.>

이 규정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4.3.18.>

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5.12.3.>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2.11>

이 규정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2호 서식)

민 원 처 리 부

번호		일시									
민원인 정보		성명	· 명			민원제목					
연락처 1					연락처 2						
민원분야		방송 광고	공익 광고	교육원		연수원	도서관	박물	l 관	연구 자료	기타
주소(이메일)											
민원 내용											
처리 결과		처리담당부서				협조부서			처리일시		
		처리 내용									

민 원 상 담 부

번호	일 시	민	원 🤉	ો	상담내용	처리내용	응대자
민조		성 명	연락처	주 소	8 급대중	시니네공	

이 의 신 청 처 리 대 장

	일시	신청인						
번호		성명 연락처 (전화번호/주소)						
	민원처리	결과 통보일	이의신청 대상	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				
	_		처분결정일	처분내용				
	처 :	분 결정						